

토지거래허가제도 업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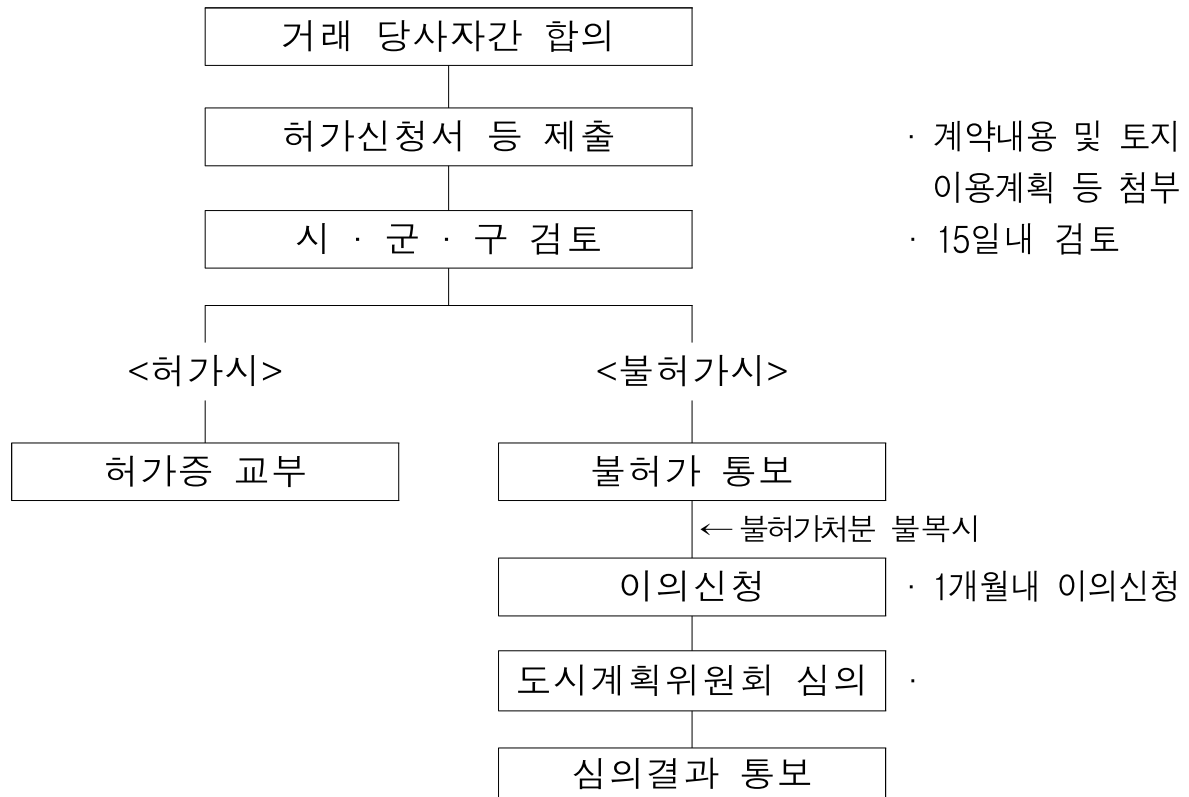
2015. 11.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 개요	1
2. 허가대상면적 산정 기준	2
1) 일단의 토지거래	2
2) 토지의 분할거래	2
3. 허가 특례	3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3
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4. 허가기준	3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3
2)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4
3)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	4
4) 토지 이용 상 적합한 사업에 이용	5
5)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	5
6) 현상보존 목적 취득	6
5. 제출서류	6
6. 토지 이용의무	8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조항	8
※ 첨부 : 제출서류 서식	9

1.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 개요



1) 허가권자 : 토지 소재지 행정시장

- 신청서 제출 : 행정시 종합민원실

2)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

3) 허가대상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의 유상거래

-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ex)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 포함),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 :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등

4) 허가대상 토지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外 (지목 기준)	농 지	500㎡ 초과시
	임 야	1,000㎡ 초과시
	기타 토지	250㎡ 초과시
도시지역 (용도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시

2. 허가대상면적 산정 기준

: 도시지역 안 - 용도지역 기준, 도시지역 밖 - 지목 기준

※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 현실지목 기준 (현실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상황일 경우)

1) 일단의 토지거래

-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여러 필지 토지 전체가 하나의 매매계약 목적 물이라고 보여 지는 경우 수필지 토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함.
- 공유지의 거래 : 지분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 판단.
- 세대 구성원(부부가족 등) 토지 취득 :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로 허가대상면적 여부 판단.

2) 토지의 분할거래

- 허가구역 지정 후 토지 분할된 경우 :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대상 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 된 경우,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임. 또한, 분할된 때 필지의 최초 거래 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구역 지정 후 공유지분 형성된 경우 :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대상 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지정 후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임.

3. 허가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
- 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토법 시행령 제121조)

-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얻어 조성한 대지 및 제38조에 의하여 주택 공급 하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공급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

4. 허가기준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제주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
-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 제주도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소명 외에 기존 주택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 제출하는 경우

⇒ 이 경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을 경우 주택 용지 또는 주택 추가 취득 소명 외에 기존 주택 처리 계획서 제출 필요.

2)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의 범위 : 건축법령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문화·집회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

- 제주도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임업인
- 기타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농업 >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6개월 거주 기간 폐지)
 -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6개월 거주기간 폐지)
-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세대원 거주요건 및 실거주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 제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자기거주용 주택의 소유여부 매매계약서,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 등기여부, 확정

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실제 거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함.

4) 토지 이용 상 적합한 사업에 이용

<기반시설 정비된 지역>

- (대지조성·주택건설·산업용지조성 또는 공장건설용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는 경우로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여 현실적으로 이용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목적으로 토지 취득)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매입하는 경우나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추천** 등을 하는 경우로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여 현실적으로 이용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기반시설 정비되지 않은 지역>

-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로서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건축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하려는 경우 사실상 당해 시설물·건축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그 토지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봄
- 농지·임야의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 또는 전용허가나 전용신고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하여 개발목적으로 허가 할 수 없음

5)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원료의 제공, 제품의 사용·판매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사업

6) 현상보존 목적 취득

-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농지 제외)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제한되는 토지

- 도로·하천 등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 현상보존 : 취득 당시의 토지 현상대로 계속하여 보존·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행위나 물건의 적치·보관 또는 토석·오물 등의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농지·임야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영농이나 영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임업목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제출서류

1)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 신청시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매수자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② 토지이용계획서
 - 착수일·준공일 등 추진일정 포함, 착수일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초과 불가
 - 소요자금 개략산출내역
- ③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⑤ 제주도외 거주 기존 주택 소유자 : 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주택 추가적 취득 사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
- ⑥ 제주도내 거주 기존 주택 소유자 : 소명서 이외 기존주택처리계획서 (매매·임대 등)

2) 농업용 토지 허가 신청시

※ 제주도내 전세대원 실제 거주해야 함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매수자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② 농업경영계획서

- ③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⑤ 공동취득 시 공동참여계획서

3) 임업용 토지 허가 신청시

※ 제주도내 전세대원 실제 거주해야 함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매수자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② 토지이용계획서
 -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식 별도)
 - 소요자금 개략산출내역
- ③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⑤ 공동취득 시 공동참여계획서

4) 축산업, 수산업용 토지 허가 신청시

※ 제주도내 전세대원 실제 거주해야 함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매수자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② 토지이용계획서
 - 착수일 · 준공일 등 추진일정 포함, 착수일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초과 불가
 - 소요자금 개략산출내역
 - 시설 설치, 기계 · 기구 구입 필요한 경우 그 내역 및 추진일정
- ③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5) 그 밖의 용도로 이용 신청시

-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매수자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② 토지이용계획서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포함)
- ③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6) 공통사항(실거주확인용)

※ 농업용 · 임업용 · 축산업 · 수산업용 토지 허가 신청 시 아래 중 하나

- ① 자기 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 ②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여부

- ③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대차계약서
- ④ 그밖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6. 토지 이용의무

- 1) 토지거래 허가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
(제외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 2) 이용의무 발생
 - 토지의 이용의무는 토지를 취득한 날(이전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가급적 토지취득일에 근접해야 함
- 3)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2년, 개발용(상업용지, 공업용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조항

- 1)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는 3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 기준 : 미이용 방치 (10%), 타인 임대(7%), 무단목적변경(5%)
- 2) 허가제 위반 효과 :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 3) 벌칙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 벌금

※ 첨부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부.
토지이용계획서(법정 서식 아님) 1부. 산림경영계획서 1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시·군·구		처리기간		
				*구 분	소유권·지상권	15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 . . 제 호			
				*처 리	. . . 제 호			
매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 소	우 (전화 :)						
매 도 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 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 번	지 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용 도지구	⑭이용현 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 리 설 정 현 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 한 사항	번호	⑯종 류		⑰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 류	⑲내 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㉓특 기 사 항		
				㉑존 속 기 간	㉒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 지				정 착 물		㉔예정금액합계(원 (㉗+㉘))
		㉔지목 (현실)	㉕면적 (㎡)	㉖단가 (원/㎡)	㉗예정 금액(원)	㉘종류	㉙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 획서를 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 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시장·군수·구청장 확 인 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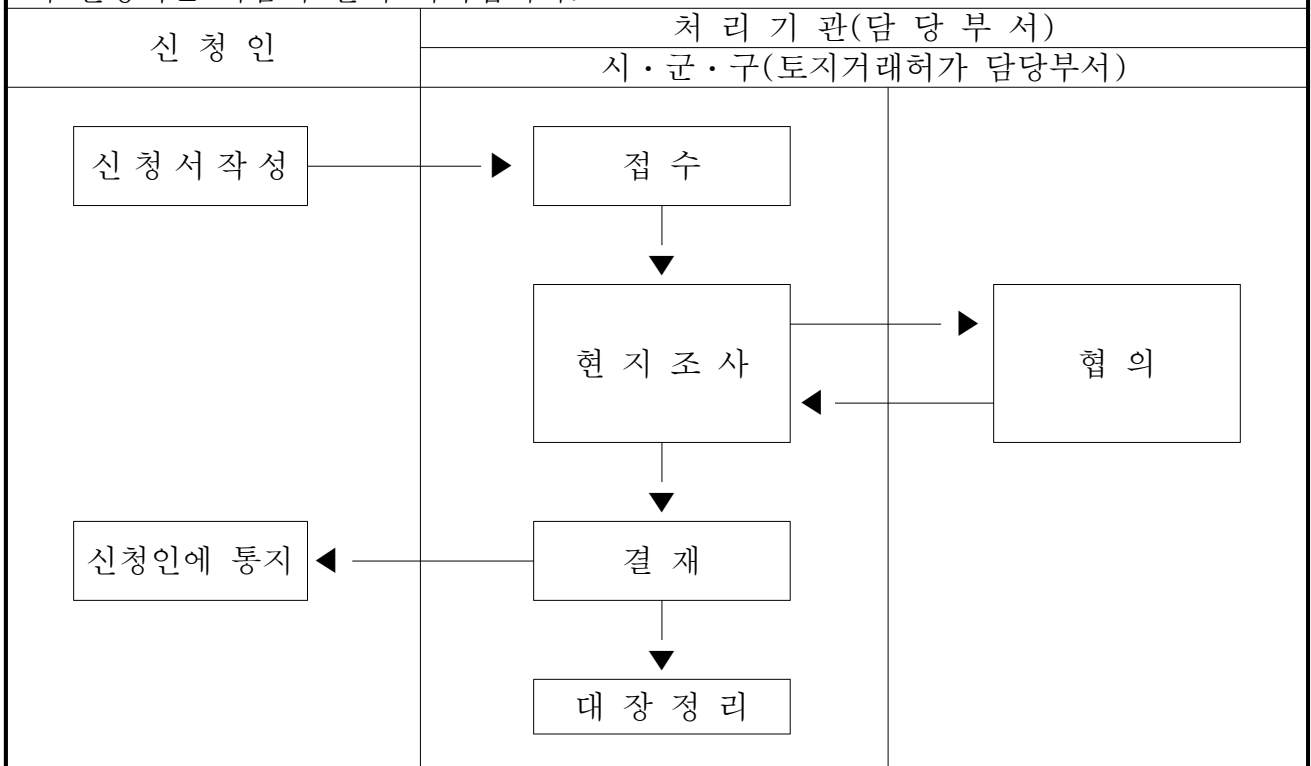
< 유의사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요령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⑩⑪란에는 전·답·대·잡종지·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임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5. ㉔란에는 매매·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앞쪽)

제출인 (매수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기자금	④금융기관 예금액 원	⑤토지보상금 원
	⑥부동산매도액 원	⑦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⑧현금 등 기타 원	⑨소계 원
차입금 등	⑩금융기관 대출액 원	⑪사채 원
	⑫기타 원	⑬소계 원
⑭ 합계	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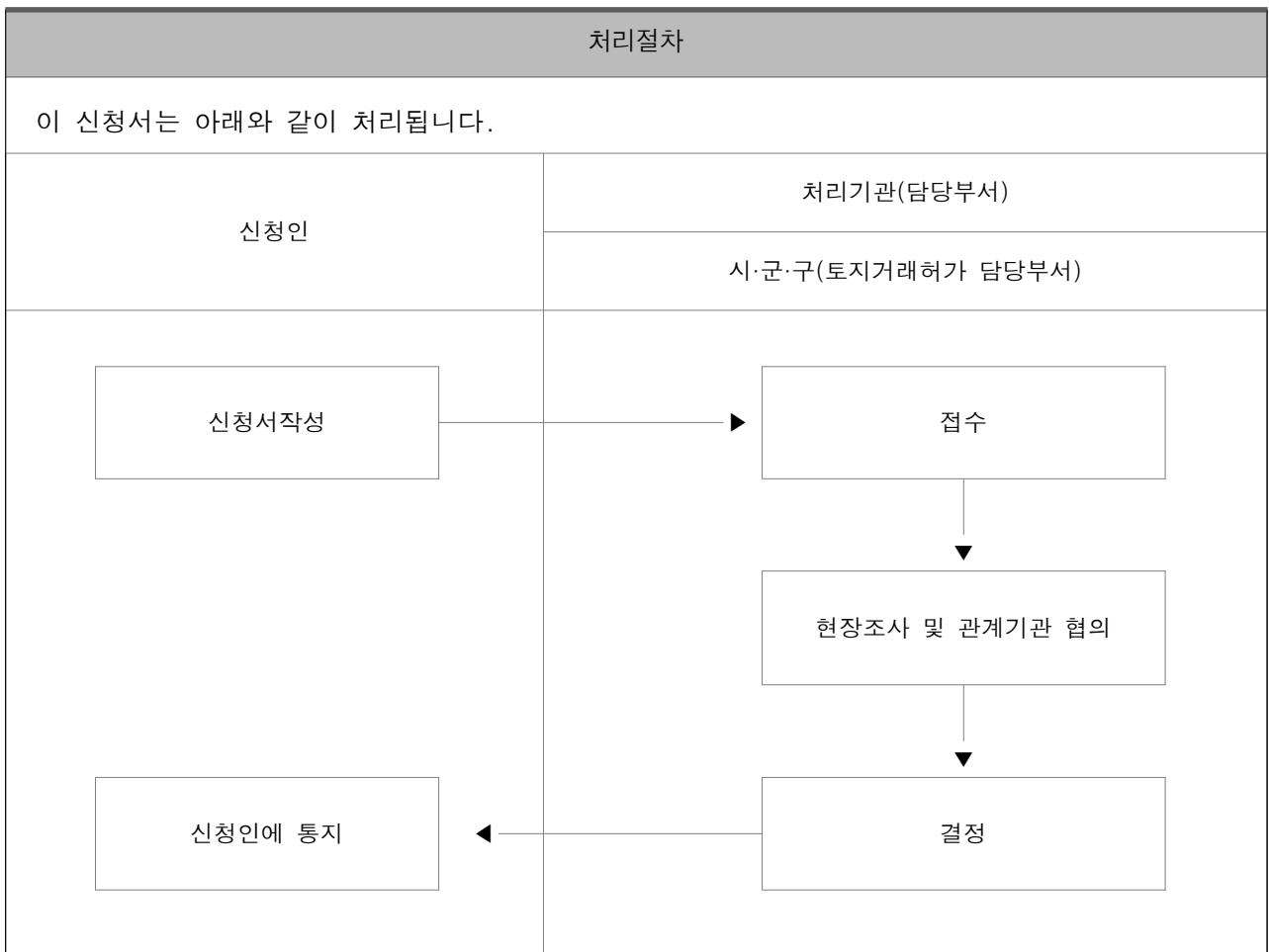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본 계획서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④ ~ ⑧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 3. ⑤의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⑤에 기재합니다.
- 4. ⑩ ~ ⑫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 5. ⑨에는 ④ ~ ⑧의 합계액을, ⑬에는 ⑩ ~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⑨와 ⑬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

1. 토지 및 건축물현황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현황		비 고
		법 정	현 실			구조 및 용도	면적(㎡)	

2. 매수목적(매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

3. 토지의 이용계획

1)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주거용 및 사업용일 경우 착수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착수일은 토지취득일부터 2년 초과 불가)매수하는 토지가 임야일 경우 5년간(6개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작업일정 포함) 산림경영계획을 별지에 기재)

2)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시설의 설치나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내역 및 추진일정(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17조 (동 절차)제1항 동 시행규칙 제19조(동 신청서)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차후 토지이용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의2(강제이행금)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도 이의 없음을 서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허가받는자) 주 소 :

성 명 : (인)

등록번호:

연락처 :

000시장 귀하

산림경영계획서

(앞면)

취득대상토지에 관한사항 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주거와의 거리(km)			
	시·군	구·읍·면	리·동							
기존소유 임야현황 ②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취득대상 토지와의 거리(km)			
	시·군	구·읍·면	리·동							
산지현황에 관한사항 ③	토지 형상		산림 현황							
	방위	경사도 (%)	주요수종	조림여부	수령	주요 수종의 구성비 (%)				
동거가족 현황 ④	관계	직업	경영참여 여부	기타 참고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⑤	경영대상 작목									
	수확의 시기	년	월	일						
	경영착수일	년	월	일						
	기구 확보 현황									
	노동력 확보방안									
작업일정 ⑥	작업기간		작업 종류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조달방안				
	합 계		-		천 원	-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부터	까지			천 원					

(뒷면)

※ 작성방법

- 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등을 기록하고, 취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와 대상토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
- ② 기존에 소유한 임업경영용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등을 기록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
- ③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방위·경사도와 현재 그 토지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 등의 생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 ④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동거가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 ⑤ 산림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노동력 확보 방안 및 경영에 따른 기계·기구 경영 착수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⑥ 5년간의 작업일정을 6개월 단위로 기록하고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산림경영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록